

2023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 공모 수정 재공고

□ 공모 요강 변경 사항

○ (변경내용) 공모요강 신청제외 대상 일부 수정

- 변경 전 : ① 고유번호증·면세사업자 신청 불가

- 변경 후 : ① 면세사업자 신청 불가

*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의거, 비영리인 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비창업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

□ 적용 기준일

○ 모든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(23.2.8) 기준으로 함

※ 2023년 예술분야 창업 지원 사업, 이렇게 달라졌습니다.

■ 지원 구분

사업구분	예술기업 단계별 성장 지원		
	일반 지원		창업 특화 지원
	초기창업 지원	창업도약 지원	ESG
대상	(예비)창업~초기기업	성장기 기업	사회·환경적 문제해결 기업
지원내용	사업기반 구축 지원	기업·사업 확장 지원	ESG 기반 사업모델 발굴·육성
지원규모	50개 기업 내외 (최대 70백만원~30백만원)	30개 기업 내외 (최대 150백만원~70백만원)	10개 기업 내외 (최대 70백만원~30백만원)

* 예비창업과정은 예술산업 아카데미(아트 비즈니스 챌린지 프로그램) 운영 예정

■ 지원방식

- ▶ 예술분야 "초기창업", "창업 특화(ESG)" 지원 사업은 최대 3회 신청·선정이 가능합니다
- ▶ 예술분야 "창업도약" 지원 사업 선정기업은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- * 상세내용은 사업별 공모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023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 공모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초기기업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화 등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기업을 육성하고 자생력을 제고하는 <2023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>을 진행합니다. 혁신적 사업, 전문성 및 적극적인 실행능력을 겸비한 예술분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※ 예술분야 창업기업이란?

미술(응용미술 포함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, 만화, 게임,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(업력 7년 이내(중소기업 창업기업법 제2조))을 모두 포함

- *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(정의) 및 제 36차(개정 22.9.27.), (시행 23.3.28.)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
- * 연예, 영화, 만화, 건축, 출판, 어문, 게임,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

□ 공모 개요

- (공모명) 2023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 공모
- (지원목적) 예술분야 예비창업자·초기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전문 창업보육을 통한 예술기업 육성 및 자생력 제고
- (지원대상) 예술분야 업력 3년 미만 초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

* 예비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국고보조금 2차 교부 전 사업자등록 이행 필수

- (협약기간) 2023년 4월 ~ 11월 (약 8개월)
- (선정규모) 총 50개사 내외
- (지원내용)
 - (자금지원) 사업화자금 30백만원~최대 70백만원 지원
 - * 총 사업비(100%) = 국고보조금(90%) + 자부담금액(10%) (총 사업비 정산 필수)
 - * 지원금은 심사에 따라 차등 지원, 2회 분할교부하며 중간평가 이후 2차 교부 진행
 - (창업보육)
 - 기업 BM 진단을 통한 전담 멘토 매칭
 - 창업교육(실무 및 특화), 컨설팅, 네트워킹 등 맞춤형 지원
 - (자원연계) 클라우드 펀딩(펀딩오픈 및 홍보 지원), 투자상담회, IR 데모데이, 기업협력 등을 통한 민간재원 유치 기회 제공
 - (네트워킹) 예술분야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
- (성과평가)
 - (성과관리) 지원사업 전, 중간, 종료 이후 목표 설정 및 측정
 - (중간평가) 성과목표 달성도, 성실참여도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
 - (최종평가)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금 지급, 우수기업은 차기년도 지원 신청 시 심사 면제

□ 신청 대상 및 요건

▶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해 “초기창업” 지원 사업은 **최대 3회** 신청·선정이 가능합니다.

- 단,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(업력 등)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아래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의 각 단계별 참여 이력이 누적 적용됩니다.
'20~22년 예술기업 공모전, '19~22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:서로(SEORO)

- (신청대상) 예술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예술기업*
- (신청요건) 공고일 기준 ①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②기업 설립 후 3년 미만*의 사업자
 - * ②의 경우,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계시일이 2020. 2.8.~2023.2.7. 이내인 창업기업 신청 가능

① 예비창업

○ 팀원 전원(대표자 포함) 공고일 기준 개인·법인 설립 미등록자여야 함

○ 선정 예비창업자는 국고보조금 2차 교부 전 사업자등록 이행 필수

② 사업자

○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
○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

※ 단, 중소기업창업법지원법 시행령 제2조(창업의 범위)에 의거,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 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(동종전환),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업력으로 판단함

○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* 선정 후 공모신청서 제안 성과목표 (산출물, 공통·특화 목표, 예술 생태계 기여도)는 개선을 위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

* 예술작품 창·제작, 일회성 공연·전시·행사·해외투어, 단순 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

○ (우대사항) 아래 해당되는 경우, 1차 심사 시 가산점(각 2점) 부여

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

② 19년~22년 예술기업 공모전(예비, 초기, 성장) 및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(SEORO)지원사업(시작, 세움, 성장) 선정기업 중 수상기업(IR데모데이, 투자유치대회, 임팩트투자유치대회)

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(KOPIS) 빅데이터 공모전 수상기업

④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일 경우

(1983.2.9. 이후 출생인 자, 공동대표의 경우 1인만 해당돼도 가능)

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 지역)외 지역인 기업

⑥ 사업주가 장애예술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30% 이상을 장애예술인으로 고용한 사업체

□ 신청 · 접수방법

○ (접수기간) 공고일 ~ 2023년 3월 10일(금) 15:00까지

* 접수마감일 이후 최종선정 수의 1.5배 미만 접수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
○ (신청방법)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에서 온라인 제출

○ (주의사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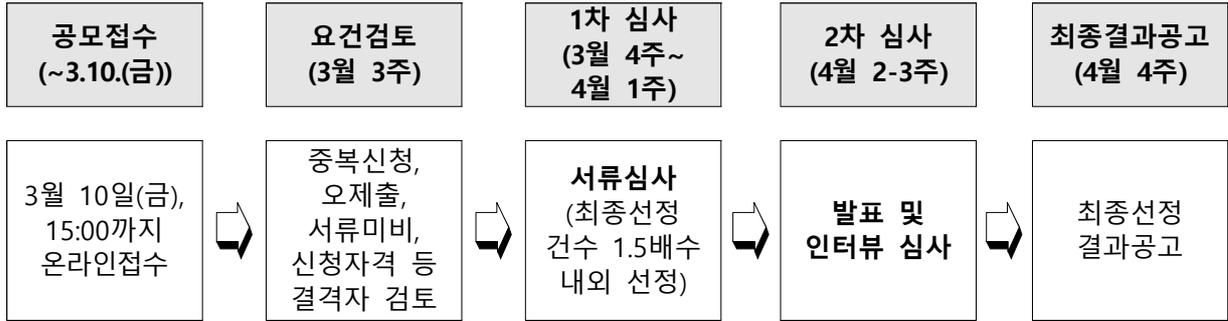
- 접수마감(23. 3. 10.(금), 15:00까지) 기한 내 e나라도움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함(15시 이후 입력 불가)

- 접수 마감 당일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수가 안될 수 있으니 사전 제출 필수

*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(1670-9595) :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문의, 장애신고 등 문의

□ 심사 및 선정

- (심사일정) 2023년 3월 2주 - 4월 4주(예정)
- (심사방법) 외부 전문가에 의한 1차 심사 및 2차 심사
- (심사기준) 사업성, 혁신성, 실현가능성, 예술분야 기여도 등

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공모요강을 통해 지원요건, 유의사항 등 세부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문의

- (문의처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지원본부 기업성장지원팀
- (문의방법) 전화: 02-708-2268, 2235 이메일: startup@gokams.or.kr

* 전화문의 : 평일(월~금) 10:00~17:00 중 가능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